

'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(첨단기술)' 모집 공고

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분야 혁신 창업 기업의 벤처육성을 위해 '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(첨단기술)'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1월 20일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
1 모집 개요

① 지원목적

- 농식품 첨단기술(그린바이오 6대 전략 분야 및 스마트농업 분야)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, 안정적인 사업화 및 사업 고도화 지원 등 추진

② 모집대상

- 첨단기술*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,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**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(사업 개시일이 2018.2.15.~2025.2.14.에 해당하는 기업)
 - * 첨단기술 :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([참고1]~[참고2] 참조)
 - **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주사업장(사업자등록증상)이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

③ 선정규모 : 30개 기업(개인 또는 법인사업자)

- 그린바이오 분야 15社 및 스마트농업 분야 15社

4 지원 내용

- 첨단기술분야 혁신 기술·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고도화를 위한 기술사업화, 투자IR 멘토링 등 지원
 - * 수혜기업은 주관기관(한국농업기술진흥원)이 실시하는 연계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

5 총 사업비 규모 : 9,000백만 원

○ 기업별 지원 규모(상세 내역)

[VAT 별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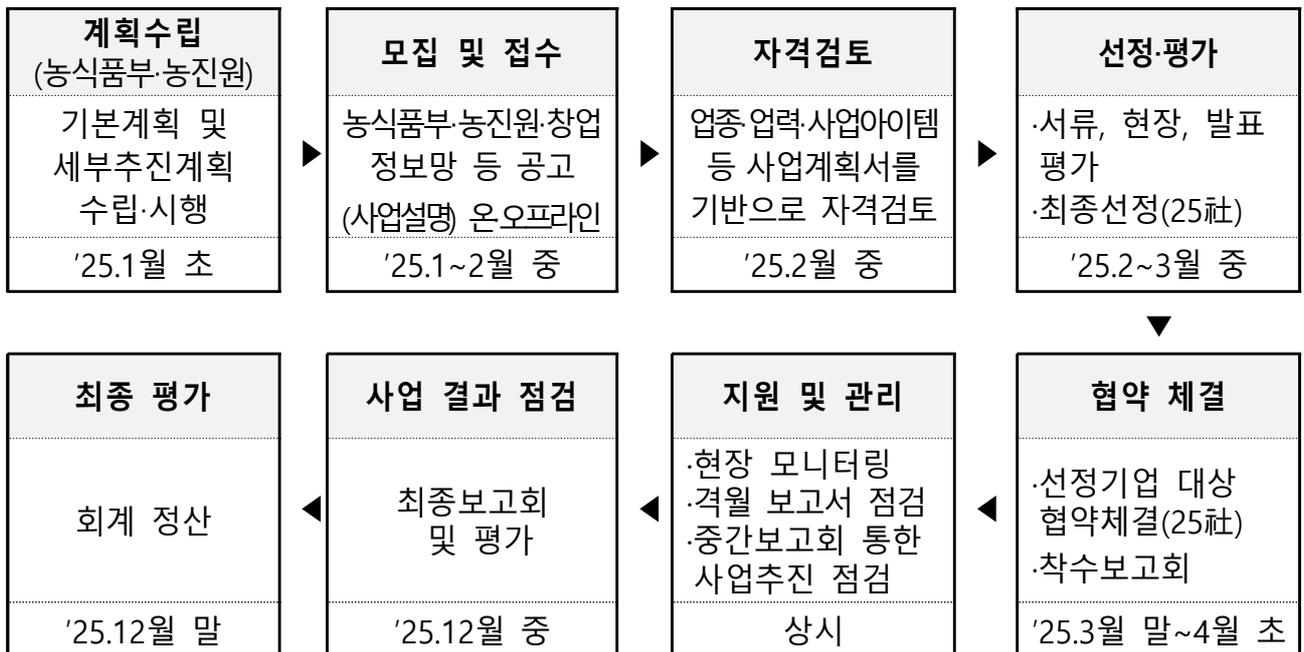
국고지원금(70%)	자부담(30%)	
	현 금(10%)	현 물(20%)
210백만원	30백만원	60백만원 상당

- * 자부담 중 현금(10%)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
- ** 사업비 중 국고지원금은 3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며, VAT는 기업부담임

6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5년 12월 31일까지

- * 동 사업은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하며, 매년 국고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

< 사업 추진 절차(안) >



- * 사업 추진 절차(내용) 및 일정은 내·외부 환경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

신청 및 접수

① 신청·접수기간 : '25년 1월 20일(월) ~ 2월 14일(금), 15시까지

* (주의) 신청·접수 마감일은 사업문의·신청이 폭주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2~3일 이전에 접수하기를 권장함

② 신청 방법 :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* 방문 및 이메일(E-mail) 접수는 불가

○ (온라인) 농식품창업정보망(www.a-startups.or.kr)에서 신청 및 접수

-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
: (창업정보망) 회원가입 → 공고 게시물 하단 '접수하기' → 신청서 작성(제출서류 업로드 포함) → 페이지 하단 '제출' 버튼 클릭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신청절차	회원가입	기본정보 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/제출
제출서류	-	-	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	-

* 기존 가입회원의 ID/PW 분실하였을 경우, 창업육성팀(063-919-1433)으로 문의

** (주의) 가점인정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한함(마감일 이후 제출 미인정)

- (제출 후 수정) 마이페이지 클릭 → 페이지 하단 '육성기업 사업 신청 내역' 內 '접수중' 클릭 → 페이지 하단 '수정' 클릭 →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'제출' 버튼 클릭

* 수정은 접수기간 내 제한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

- (제출자료 삭제) 부득이한 사유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 (sonsedosy@koat.or.kr)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요청

○ (우편) (54667)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

*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,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만 인정하고, 우편 소인일이 신청 마감일인 것에 한하여 인정함

③ 신청 시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필수서류 *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	1.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(첨단기술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	서류 1 [양식 1]
	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	서류 2 [양식 2]
	3. 사업자등록증(개인 및 법인) 1부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1부 * (주의)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,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	서류 3
	4. 기업 재무제표(2022년~2024년, 3개년) * 2024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, 추후 제출 ** 설립년도가 최근(2023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	서류 4
	5. 납세증명서(납세증명, 지방세 납세증명)	서류 5
	6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2022년 ~ 2024년, 3개년) * 설립년도가 최근(2023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	서류 6
	7. 사실증명[사업자등록사실여부 / 총 사업자등록내역] *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'공동대표'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-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-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(지분률 포함) 사본 - 총 사업자등록내역은 기간은 전체로 출력(발급) ** 증빙서류 발급 절차 - 국세청 '홈택스'→민원증명→사실증명신청→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 / 총사업자등록내역 / 폐업사실증명원)	서류 7
(해당시) 필수서류	8. 폐업사실증명원 * (주의)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	서류 8
	9. (공장등록 기업의 경우) 공장등록증 1부	서류 9
	10. (용역비/공정개선비 집행계획 시 필수) 사업수행계획서 1부	서류 10 [양식 3]
(선택사항) 기타서류	11. 가점사항 증빙서류(미제출 시 미인정)	서류 11
	12.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*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증 사본, 각종 인증서 등	서류 12

* (주의)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

**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

***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('24.11.13~'25.2.14)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

3**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****① 신청자격**

- 첨단기술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, 공고 모집 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(사업 개시일이 2018.2.15.~2025.2.14.에 해당하는 기업)

* 창업기업이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내지 2호에 따름

** 창업업력 판단 기준은 [참고3] '창업 여부 및 창업 업력 기준표' 참조

② 지원분야**[① 그린바이오 분야]**

* 상세 : [참고 1] 참조

세부 분야	관련 분야
①-1. 종자	내재해성 종자, 고기능성 종자 등
①-2. 동물용 의약품	백신, 줄기세포 치료 등
①-3. 미생물	종균 활용 발효식품, 바이오농약·비료·사료첨가제 등
①-4. 곤충	곤충 활용 단백질·오일 추출 가공품 등
①-5. 천연물 유래소재	의약, 화장품, 식품원료, 향미제, 바이오차 등
①-6. 식품소재	기능성 식품(메디푸드 등), 식물육, 배양육, 펫푸드 등

[② 스마트농업 분야]

* 상세 : [참고 2] 참조

세부 분야	관련 분야
②-1.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	온실·노지·축산 스마트팜 시스템, 식물공장 시스템, 환경 센서 및 제어 시스템, 기타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·제조
②-2. 자동화·무인화	자율주행 트랙터, 수확 로봇, 농업용 드론, 위치기반 자동제어 솔루션
②-3. 빅데이터·인공지능·클라우드	작물·가축 생육모델 분석 서비스,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, 농장 경영 SW, 데이터 기반 온라인 판매지원 플랫폼,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등

- 신청기업은 ①그린바이오 ②스마트농업 분야별 상세 신청 분야가 신청기업의 주요 사업임을 사업계획서 및 선정평가 과정(현장 및 발표평가 시)에서 제시하여야 함

③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-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,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(R&D지원사업 제외)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
 - *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**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(협약) 불가능(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)
 - ** (창업지원 정부사업)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[참고5]에 해당하는 사업
-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, 한국농업기술진흥원(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)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(기업)
- 부도, 휴·폐업기업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, 기타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
-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④ 가점 사항

- 가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발표평가 시 최대 3점 부여
 - * 가점 총합이 3점 이상일 경우, 최대 3점으로 인정

항 목	가점 조건	증빙	가점	비고
민간투자	'24년 9.99억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	투자계약서(주식인수계약서)	2	
농진원 사업참여	'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(우수기업-정부 지원금 42백만원 수혜기업 해당)	증빙제출 불필요 (농진원에서 직접 확인)	1	최대 2점 인정
	'24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(수상기업)		1	
	'24년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		1	
	'24년 글로벌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시범사업		1	
	'2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(푸드테크, 애그테크, 그린바이오)		1	
	'24년 대기업 협업 사업 * 미래식단, 프론티어랩스, 자연기반, NHarvest X		1	
	'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(온라인 농식품) * 단, 평가결과 최우수, 우수기업만 해당함		1	
	'24년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		1	
	'24년 농식품 기술평가지원사업 * 단, 평가결과 '우수기술평가' 및 '기술력평가' 결과 T1~T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		1	

우수기업 인증	기술혁신형 중소기업 ¹⁾	이노비즈인증서	1	최대 2점 인정 (유효기간 내 증빙에 한함)
	첨단기술 기업 ²⁾	첨단기술기업지정서	1	
	벤처기업 확인 ³⁾	벤처기업확인서	1	
	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 ⁴⁾	신기술인증서(NET)	1	
	농림식품신제품 인증기업 ⁵⁾	신제품인증서(NEP)	1	

항 목	가점 조건	증빙	가점	비고
우수기업 인증	기술혁신형 중소기업 ¹⁾	이노비즈인증서	1	최대 2점 인정 (유효기간 내 증빙에 한함)
	첨단기술 기업 ²⁾	첨단기술기업지정서	1	
	벤처기업 확인 ³⁾	벤처기업확인서	1	
	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 ⁴⁾	신기술인증서(NET)	1	
	농림식품신제품 인증기업 ⁵⁾	신제품인증서(NEP)	1	

- 1)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선정된 기업
- 2)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에 따른 지정기업
- 3) 「벤처기업법」 제25조의3(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등)에 따른 지정기업
- 4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5조의2(신기술인증 등)에 따른 신기술 보유기업
- 5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6조(신제품의 인증)에 따른 신제품 보유기업

4

지원내용

□ 혁신 기술 및 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지원

○ 지원사항 : 기술고도화, 제품사업화, 공정개선 등 지원

* 지원사항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

○ 지원내용

- (기술고도화)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타 분야 기술(BT, ICT, AI, 빅데이터 등)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을 확보 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

* 지원내용 : 기술개발 관련(기능·안전 인증 및 분석, 지식재산권, 자문료 등), 시제품 개발 관련(포장디자인, 용기개발 등) 포함

** 증빙 : Prototype 수준의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평가(기능, 안전등) 관련 자료

- (제품사업화) 지원분야 기술 기반 제품의 고도화, 제품의 확장개발, 민간 투자 유치, 판로·유통 경쟁력 확보 등 혁신제품의 사업화 비용 지원

* 지원내용 : 제품 고도화 및 확장개발(시제품, 관련 디자인 개선 등), 투자유치 관련, 제품 사업화 홍보 및 마케팅 등

** 증빙 : MVP(Minimum Viable Product) 수준의 시제품 제품평가(기능, 안전, 소비자 품평 등) 자료

- (공정개선) 주력제품의 작업공정 개선, 생산성 향상(원가절감·품질 개선 등) 방안, 기타 공정 기능개선 등 생산기반 혁신을 위한 공정 개발·개선 방안 도출 비용 지원

* 지원내용 : 스케일업, 공정개선을 위한 공정설계, 관련금형제작, 공정개선에 소요된 재료비(원자재, 연구재료 등), 공정개선에 검인증 비용 등

** 증빙 : 공정개선 설계도, 금형결과물, 연구노트, 검인증서 등 개선 결과물 자료

*** 지속관리대상 : 개선 후 개선사항에 따른 성과 증빙과 향후 지속적 관리

5 평가 및 선정

① 평가 및 선정 절차(안)

1	모집 공고·접수	온라인(농식품창업정보망) 및 우편 접수	1.20~2.14
↓			
2	자격 검토	필수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	2.17~19
↓			
3	서류평가	지원분야별 내·외부 평가 위원 5인 지원분야별 지원규모의 2배수 선발(총 50社) * '24년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(첨단기술) 우수기업 분야별 3社 포함 ** 경쟁률 2:1 이하 인 경우 서류평가 생략	2.21~28
↓			
4	현장평가	사업담당자 등 기업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 예정 (필요 시 전문가 동행)	3.4~21
	권리성 및 재무건전성 분석	현장평가 기업 대상	
↓			
5	발표평가	지원 분야별 내·외부 평가위원 5인 구성 현장평가 기업 대상	3.26~27
↓			
6	심의조정위원회	발표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발표평가와 가점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정 (단, 권리성 및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,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함)	4월 초
↓			
7	협약체결	선정 결과 개별 통지 및 협약체결	4월 초

* 선정 절차 및 일정은 내·외부 환경 및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② 평가기준

- (자격 검토) 지원분야 사업아이템, 창업일 및 업력, 필수 제출서류, 기타 제한요건 등 기본 신청요건 검토 * 기본요건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
- (서류평가)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요건검토, 사업계획, 정책부합성,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
- (현장평가)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사실관계 확인, 기업의 생산 및 연구시설, 인력 현황 등 확인
- (발표평가) 기술·제품·경영 분야 우수성 및 차별성, 기업역량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
- (권리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) 제안된 기술에 대한 기술권리 범위,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권리성과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

③ 선정 및 협약체결

- (선정) 지원규모 30社(그린바이오 15, 스마트농업 15)
- (결과통지) 농식품창업정보망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(E-mail)로 개별 통보
- (협약체결) 선정기업 대상 별도로 공지함
 - 선정기업(협약기업)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국고지원금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
*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

6

문의처

부서	메일주소	연락처
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	sonsedosy@koat.or.kr	063-919-1433

* 공고된 자료(공고문 및 첨부서류 등)는 문의처의 답변보다 우선하며,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함

7

선정자의 의무

-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,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
-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(현금) 부분을 입금해야 하며, 현물 자부담 부분은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수시 점검,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,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

8

유의사항

①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

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선정기업은 공고문, 매뉴얼,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

- * **(주의)**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해 신청·접수 기간 중 보완요청 등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음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-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(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)

- * **(주의)** 본 사업 협약체결 후 [참고 5]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경우, 본사업 협약은 해지되며 사업비는 전액 회수 처리됨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'신청(지원)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
- *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② 평가 중 유의 사항

- 현장 및 발표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- *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, 기업의 사업화 역량 평가 등을 위해 현장평가가 운영됨

③ 선정 후 유의사항

- ①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라 처벌(참여제한 및 제재 부가금 등)을 받게 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선정기업이 공고문, 매뉴얼,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, 선정취소·참여제한·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회수·선정취소·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회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,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
 -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'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'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- 사업비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(협약종료일+6개월) 제출 필수 *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

참 고 자 료

- [참고 1] 그린바이오 6대 전략 분야 상세표
- [참고 2] 스마트농업 지원 분야 상세표
- [참고 3]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
- [참고 4] 사용 가능 예산 비목
- [참고 5] 중복지원 불가 지원사업 목록
- [참고 6]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
- [참고 7]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

제 출 양 식 자 료

- [양식 1]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
- [양식 2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[양식 3] (용역/공정개선)사업수행계획서

참고 1

그린바이오 6대 전략 분야 상세표

구분	관련 분야 내용
①-1. 종자 ※ 분자표지, 디지털 육종 기술 활용	• (내재해성 종자 및 고기능성 종자) 기존의 종자산업이 디지털 기반산업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유전자가위, 디지털 육종, 신육종 기술을 중심으로 내재해성 종자 및 고기능성 종자 개발 분야
①-2. 동물용의약품 ※ 식물세포에 기반한 백신 개발 의약품	• (백신)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식물백신* 및 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동물용 백신** 분야 * 유전공학기술을 활용 식물에 유용한 유전형질을 삽입하여 발현, 유용한 단백질(백신)을 대량 생산 **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,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백신, 변이형 바이러스 백신 등 • (줄기세포 치료) 줄기세포 치료 관련 기술
①-3. 미생물 ※ 친환경 방제제, 비료, 사료첨가제 등에 유용 미생물 활용	• (종균활용 발효식품) 유전체 분석기술의 발달로 인체·작물과 미생물 군집간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생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종균 활용 발효식품 분야 • (프로바이오틱스) 유익균(대사 산물 포함) 소재기술 및 이를 이용한 제품 분야 • (생물농약·비료)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화학소재 대체기술 개발 및 친환경성 생물농약·비료 개발 분야 • (사료첨가제) 미생물 등을 활용한 가축, 반려동물 사료 제품 분야
①-4. 곤충 ※ 곤충을 사료, 식품, 화장품 등 소재화	• (사료) 동애등에 등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 및 기능성 사료 제품 분야 • (식품) 식용 곤충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만든 식품 분야 • (화장품) 곤충 키토산, 오일 등 곤충을 활용한 화장품 분야
①-5. 천연물 ※ 천연자원을 건기식 등 소재화	• (건강기능식품)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* 원료를 사용하여 바이오 기술과 융복합한 기술 및 제품 분야 * 식약처 고시 기준 식품공전 상 특수용도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• (사료) 미생물 등 바이오 기술이 융복합된 사료·사료첨가제 제조 기술 및 제품 분야 • (화장품) 미생물 등 바이오 기술 융복합 된 화장품 및 화장품 소재 기술 등의 분야 • (바이오디젤) 식물정유(향장·향미료 등) 및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무공해 연료와 관련한 기술 및 제품 분야
①-6. 식품소재 ※ 기능성 및 대체식품 소재화	• (대체식품) 동물성 원료를 그 외의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 및 제품 분야로 식물육·배양육 등에 적용되는 육류 모사가공기술, 세포배양기술 등을 활용한 핵심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 • (메디푸드, 고령친화식품) 기능성 신소재(난소화성 등) 및 질환자·고령자 대상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, 서비스 개발 및 제공, 기능성 성분 추출 촉매 기술 등을 포함한 분야

※ 세부분야 외 그린바이오 관련 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 포함

구분	세부 분야
<p>②-1.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스마트팜 시스템 : 온실, 노지, 축산 · 식물공장 시스템 : 환기제어, 광제어, 수경재배 베드 등 · 환경센서 및 제어시스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환경센터) 온습도·토양수분·풍향(풍속)·강우·일사량 등 환경 센서 및 제어, 양액측정센서 등 - (시설별 제어 및 통합 제어) 환기, 난방, 에너지절감, 차광커튼, 유동팬, 온수난방수 조절, 모터제어, 양액기 제어, LED, 에너지 저감시설, 관수모터제어 등 - (정보관리) 적외선 카메라, DVR(녹화장비), 웹카메라, 등 - (축산생육장치) 자동포유기, 체중측정기, 출하돈선별기, 자동급이기, 액상급이기, 건강·행동센서장치, 분만탐지기, 발정탐지기, 사료빈관리기, 음수관리기, 착유시스템, 난선별기 등 - (축산환경장치) 환기시스템, 보온등, 송풍기, 개인방역, 차량방역, 외부기상대, 암모니아 측정기, 온습도 센서기 등 · 기타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·제조
<p>②-2. 자동화·무인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율주행 트랙터 · 수확로봇 등 농업용 로봇 : 자율주행기능 탑재 트랙터·이앙기, 자동 조타장치, 로봇팔형 수확기 · 농업용 드론 : 포장 시각화, 살포, 시비, 파종 등 · 위치기반 자동제어 솔루션 : GPS가이드스, 각종 무인화 장비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장치 및 시스템 · 기타 자동화 및 무인화 기자재 개발·제조
<p>②-3. 빅데이터·인공지능·클라우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작물·가축 생육모델 분석 서비스 : 데이터 기반 작물·가축의 생육모델 개발, 생육모델서비스 등 ·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: 데이터서비스 제공 플랫폼 · 농장경영 SW : 농장 ERP, 구매·판매, 자원 관리 등 · 데이터 기반 온라인 판매지원 플랫폼 등 : 데이터기술기반 온라인 거래 및 판매지원 플랫폼, 스마트 이력관리 시스템 등 · 기타 빅데이터·인공지능·클라우드 개발 및 제조 : 이미지·수치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, AI 기반 분석, GIS 서비스 등

※ 세부분야 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 포함

참고 3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창업아님 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		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다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다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- 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참고 4

사업비 예산 비목

비목	세부 사항	비목 정의
직접비	인건비 신규직원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등 본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직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자부담(현금·현물) 부담금 사용분 이외의 인건비 * 신규직원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종료일 이내 신규 채용한 자
	재료비 재료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·원료 구입비 *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의 소모품의 경우 : 비품, 사무용품, 시험 용기, 공구 등 가능
	시설 장비비 사업화에 직접적인 기계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실용기술개발, 성능개선, 시험, 검사 등에 필요한 기구·장비·설비, S/W 등 구입·구축 및 임차료 비용 * 사업계획서 상 제품제작의 필요연관성이 높고 사업관리위원회 사전승인 득한 경우 구매 가능 * 사무용 집기, 가구 기구, PC 불가
	공정 개선비 공정개선 개발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 구축된 공정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업계획서상 주력제품의 본격 시장진출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개발 비용 * 공정관련 단순 장비구입비가 아닌 공정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 개발 비용
	용역비 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할 수 없는 활동(시제품 제작, 제품기획, 기술연구개발용역 등)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하고, 이에 대한 비용 지급 * 사업 결과 달성에 필요한 부분 용역에 한정
간접비	지급 수수료 전문가 컨설팅 기자재 임차 시험분석 국내외 전시회·박람회 참가 홍보자료 번역 기술이전·가치평가 해외진출 지식재산권 확보 교육훈련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* 기술이전비, 기술가치평가 수수료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해외 운반비, 보관료,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기자재 임차비 등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·유지 관련 비용 창업기업 임직원의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비용
	임차비 사무실 및 공장 임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기업 사무실(본점, 기업부설연구소) 및 공장(제조가공) 임대료
	광고 선전비 홈페이지 구축 포장지·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TV·일간지 등의 직접 광고홍보비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	회계 정산비 사업비 회계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격월 검토 및 회계정산 수수료
	기 타 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항목 중 위의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활용 가능 비교견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, 불가항목 별도 기재

* 해당사항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(첨단기술) 매뉴얼을 따르며, 변경될 수 있음

참고 5

중복수혜 불가 정부 지원사업 목록

소관부처	전담(주관)기관	사 업 명
농식품부	한국농업기술진흥원*	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(창업기업)
		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
환경부	한국환경산업기술원	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
중기부	창업진흥원	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
		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
		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
		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
		창업중심 대학사업
		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
	정보통신산업진흥원	K-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챌린지
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

*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중복수혜(협약)은 불가함

** 위의 사업 외 타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인 경우, 문의 후 사업지원 권고

참고 6

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및 온라인 제출 요령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필수서류 *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	1.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(첨단기술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	서류 1 [양식 1]
	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	서류 2 [양식 2]
	3. 사업자등록증(개인 및 법인) 1부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1부 * (주의)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,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	서류 3
	4. 기업 재무제표(2022년~2024년, 3개년) * 2024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, 추후 제출 ** 설립년도가 최근(2023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	서류 4
	5. 납세증명서(납세증명, 지방세 납세증명)	서류 5
	6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2022년~2024년, 3개년) * 설립년도가 최근(2023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	서류 6
	7. 사실증명[사업자등록사실여부 / 총 사업자등록내역] *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'공동대표'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-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-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(지분률 포함) 사본 - 총 사업자등록내역은 기간은 전체로 출력(발급) ** 증빙서류 발급 절차 - 국세청 '홈택스'→민원증명→사실증명신청→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 / 총사업자등록내역 / 폐업사실증명원)	서류 7
(해당시) 필수서류	8. 폐업사실증명원 * (주의)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	서류 8
	9. (공장등록 기업의 경우) 공장등록증 1부	서류 9
	10. (용역비/공정개선비 집행계획 시 필수) 사업수행계획서 1부	서류 10 [양식 3]
(선택사항) 기타서류	11. 가점사항 증빙서류(미제출 시 미인정)	서류 11
	12.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*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증 사본, 각종 인증서 등	서류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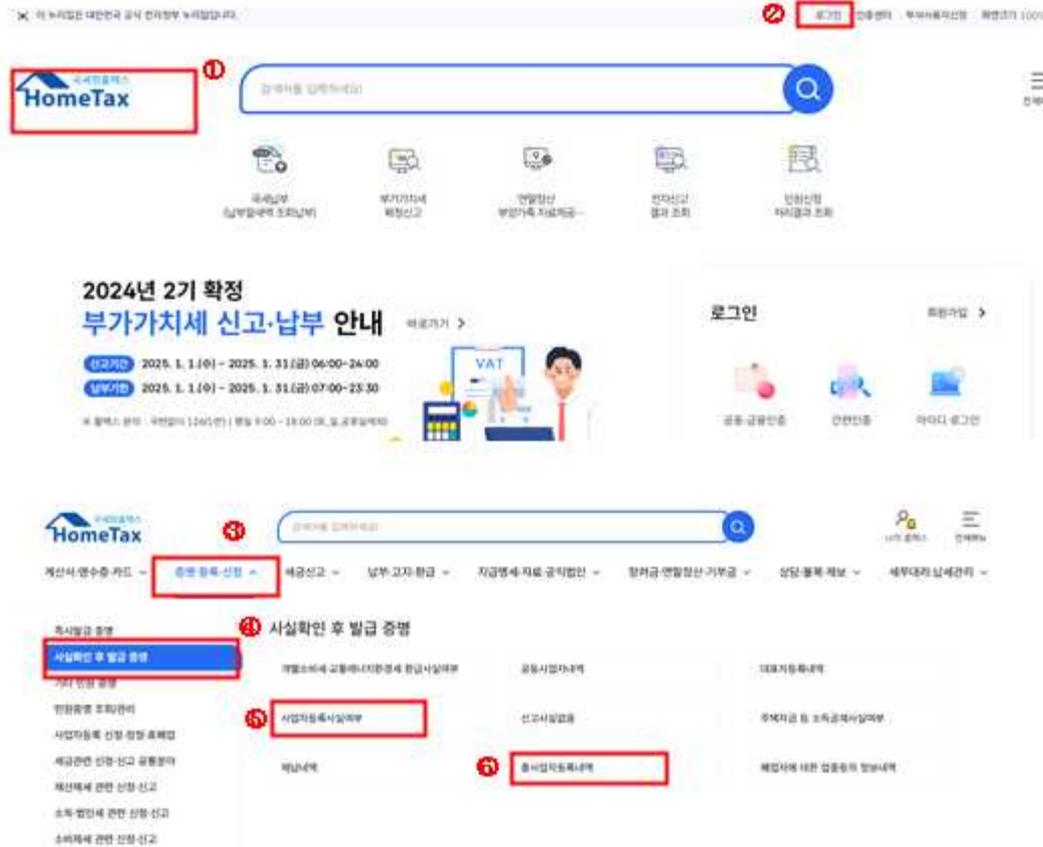
* [필수서류] 서류명 기입 및 번호 순서대로 해당 항목에 업로드(파일이 여러개일 경우 압축)

** [기타서류] 필수서류와 별도로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업로드

압축 파일명	1. 필수서류_지원분야명_기업명_대표자명 2. 기타서류_지원분야명_기업명_대표자명						
첨부서류 업로드 예시	<p>* 첨부서류</p> <table border="1"> <tbody> <tr> <td>사업계획서 (필수)</td> <td><input type="text"/></td> <td>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첨부"/></td> </tr> <tr> <td>개인정보동의서 (필수)</td> <td><input type="text"/></td> <td>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첨부"/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계획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첨부"/>	개인정보동의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첨부"/>
사업계획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첨부"/>					
개인정보동의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<input type="button" value="파일첨부"/>					

참고 7

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



- ① 국세청홈텍스접속 → ② 로그인(대표자명의로) → ③ 증명·등록·신청
 → ④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신청 → ⑤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창업이력이
 없는 경우 발급 → ⑥ (총사업자등록내역)창업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 :
 기간은 전체로 설정

<p>작성 요령</p>	<p>[(분야별)신청서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'그린바이오 또는 스마트농업' 해당분야 신청서에 작성 2. 사업화 과제명 : 제안 사업화 아이템을 간략하게 표현 3. 신청인 (기업명) 창업자 -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상의 업체명 동일 4. 그린바이오 또는 스마트농업 세부분야에 따른 해당분야 선택 5. 분량 : 양식을 유지하여 한 장에 맞춰 작성 <p>[(공통)사업계획서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청분야 및 업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분량을 조절하여 기술 (항목 삭제 불가) 2. 파란색 안내문구 및 안내박스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며, 작성 후 안내박스 가이드는 삭제하여 제출 3.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되, 특히 시장 및 기술동향, 선행기술 및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시 객관적인 데이터 및 출처 제시 요망 4. 제출 파일 중 신청서, 사업계획서 첫 장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포함 5. 사업계획서 내의 예산계획은 선정 이후 사업운영에 사용되므로 [참고4]의 예산비목 및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 시에 신중히 작성 6. 사업계획서의 작성분량 : 40페이지 내외(기타 참고자료 제외)
<p>유의 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청서 작성 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람 2.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 제외 될 수 있음 3. 접수된 서류와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.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5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
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	
구 분	세부 내용
□ 자가진단표	-가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표 체크
□ 일반 현황	-사업화과제명, 신청분야, 신청기업 등에 관한 개요
□ 사업 계획	
1. 신청자 개요	-신청자(대표자) 인적사항,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적, 참여인력 현황 등 작성
2. 기업 개요	-신청기업명, 기업소개, 특기사항, 주주구성, 재무현황 등 작성
3. 계획 개요	-사업화과제명, 아이템 및 계획, 성과목표 등 개요
4. 계획 상세	
4-1. 사업 경쟁력	1. (시장성) 해당분야의 시장 분석, 해당 아이템의 시장점유율·시장선도 가능성, 해당기업의 사업화단계 수준 등
	2. (기술성) 보유기술의 차별성·우수성·완성도·난이도 등 기술 경쟁력
	3. (사업화) 기반시설 보유, 판로개척 및 마케팅, 기타 기업 역량 등 기재
	4. (인적역량) 전문인력 현황 및 수준,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역량
	5. (그간 실적) 내수시장 진출, 글로벌, 자금조달 실적 등 기재
4-2. 사업화 문제인식	-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기재
4-3. 사업고도화 계획	1~3. 사업 목표 및 핵심아이템 고도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전략 및 세부계획 - 기술개발→제품사업화→공정개선 단계를 참조하여 연간 사업추진 전략 기술 - 추진코자하는 세부 계획 기재
	4. 사업추진 일정 : '25년 지원사업 추진일정
	5.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: 국고지원금+대응자금(현금,현물)의 사용계획 기재 ※ 제출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실제 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, 계획과 무관하게 집행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 계약 해지 될 수 있음
4-4. 성과 창출 전략	1. 사업성과목표 : 기관 및 기업제시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
	2. 기술개발 : 개발 중인 기술의 성과 도출 계획으로 개발일정, 등록일정, 활용 계획,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이용계획 등이 포함됨
	3. 매출 : 주 타겟층, 국내외 시장진출 실적 및 향후 진출 방안, 목표성과 등
	4. 투자 : 국내외 투자 실적 및 향후 투자유치 방안, 이용계획 등
	5. 신규고용 : 신규고용 계획
	6. 기타 : 각 기업별 특성에 따른 성과목표가 있는 경우 기재

20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신청서

1 농식품(첨단기술) 벤처육성지원사업 참여 자가진단표

해당 시 체크

		가점 대상	(체크 시 해당 증빙 제출 필수!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1	민간 투자	'24년 9.99억원 이상 투자 유치 이력		<input type="checkbox"/>
2	농진원 사업참여	'25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(우수기업-정부 지원금 42백만원 수혜기업 해당)		<input type="checkbox"/>
3		'24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(수상기업)		<input type="checkbox"/>
4		'24년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		<input type="checkbox"/>
5		'24년 글로벌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 시범사업		<input type="checkbox"/>
6		'24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(푸드테크, 애그테크, 그린바이오)		<input type="checkbox"/>
7		'24년 대기업 협업 사업 * 미래식단, 프론티어랩스, 자연기반, NHarvest X		<input type="checkbox"/>
8		'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(온라인 농·식품) * 단, 평가결과 최우수, 우수기업만 해당함		<input type="checkbox"/>
9		'24년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		<input type="checkbox"/>
10	우수기업 인증관련	기술혁신형 중소기업	이노비즈인증서	<input type="checkbox"/>
11		첨단기술 기업	첨단기술기업지정서	<input type="checkbox"/>
12		벤처기업 확인	벤처기업확인서	<input type="checkbox"/>
13		농림식품신기술 인증기업	신기술인증서(NET)	<input type="checkbox"/>
13		농림식품신제품 인증기업	신제품인증서(NEP)	<input type="checkbox"/>

		지원 제외 대상	(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1	신청한 사업 아이템은 농산업(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)과 관련성이 없다.			<input type="checkbox"/>
2	창업한 후 모집 마감일 기준 7년 이상 경과 하였다. (2018.2.15.~2025.2.14.에 창업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) *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중 회사성립년월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한다.			<input type="checkbox"/>
3	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(징수유예 포함)			<input type="checkbox"/>
4	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.			<input type="checkbox"/>
5	신청기업이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(구, 농업기술실용화재단)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상태이다.			<input type="checkbox"/>
6	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다.			<input type="checkbox"/>
7	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'신청제외 대상'에 하나 이상 해당한다.			<input type="checkbox"/>

* 신청 제외 대상이 추후 확인될 경우, 중도 사업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은 관련법에 의해 회수 조치됨

사 업 계 획 서

작성년월일	
기업명	
대표자 (신청자)	(인)
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귀중

I

신청자(대표자) 개요

1. 신청자(대표자)의 인적 사항

*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

성 명	(한 글)				생 년 월 일		
	(한 자)				연 령	만	세
학 령	기 간		학교명	수학 상태	전공 (학 위)	기술자격 (분야, 등급)	
	부터	까지					
				졸업 수료 중퇴			
경 령	기 간		근 무 처			담당업무	
	부터	까지	근무처명	직위	주요제품		
	.	.					
	.	.					
	.	.					
	.	.					
관련 업종 총 근무 기간				년 개월			
기타	연구 개발실	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	<input type="checkbox"/> 비보유		
	생산 방식		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생산	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생산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특기사항 (자격증, 상벌, 연수, 대외활동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○ ○ 							

2.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개발과제 및 내용	근무처	신청자 역 할	실시기간	사업 규모 (소요자금)	자 금 제공처	사업화 현 황

* 제안한 창업아이템 내지 창업과제명과 관련 있는 (참여)개발과제는 관련 자료(학술논문, 특허명세서 등)를 첨부해 증빙해야 함

3. 참여 인력 현황

성명	연령	현소속 직위	최종학력			담당업무 (연락처)
			학교명	전공	학위	

1. 개요

회 사 명			사업자등록번호		
			법인등록번호		
대 표 자			설 립 일		
업 종			주 생산품		
매 출 액	2022	백만원	고 용 인 원	2022	명
	2023	백만원		2023	명
	2024	백만원		2024	명
투 자 실 적	창업~24년	백만원	* 창업 이후 총 투자유치 금액 표기		
	2022	백만원	* 대표 투자처 표기		
	2023	백만원			
	2024	백만원			
사업장 주소	(우편번호)				
사업장 현황	(자가, 임차) (공장등록, 미등록) 대지 : 평, 건평 : 평				
기업 소개 (요약)					
특기 사항 (창업 이후 기업의 특기사항 연혁 순으로 기재)					

2. 주주 및 경영진 구성

(단위 : 백만원, %)

주주 구성				경영 · 기술진			
주주명	출자금액	지분율	대표자와의 관계	성명	나이	담당업무(직위)	학력 및 경력
					만 00세		
계							

3. 주요 재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	2023	2024
총자산			
총부채			
자기자본			
매출액			
영업이익			
당기순이익			

* 매출액은 증빙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 기준으로 작성하며, 증빙자료는 모두 제출 해야함. (주의) 증빙이 거짓일 경우 '25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** 총자산, 총부채 등 재무제표가 미발급되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

III

사업 계획 개요

사업화 과제명	신청기업 일반현황의 '사업화 과제명'과 동일하게 작성 (예시: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과채 한방 어린이 주스 생산, 판매)										
아이템명	* 사업화 과제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기술, 제품, 서비스 명칭										
규격	생산규모			(예상) 가격							
아이템 소개	※ 동 사업을 통해 개발 및 고도화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의 핵심 기능 등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										
이미지	※ 제품(서비스)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(이미지) 또는 설계도 삽입										
	< 사진(이미지) 또는 설계도 제목 >			< 사진(이미지) 또는 설계도 제목 >							
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	※ 사업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이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작성										
(현재 기준) 사업화 추진단계 및 추진현황	사업아이템 발굴 조사 및 기획	제품 및 생산 시설 설계	시제품 제작	기술·공정개선 상품화 개선	양산화	출시·판매 및 홍보마케팅					
	<table border="1"> <tr> <td></td> <td>√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※ 현재 제품기술서비스의 사업단계를 체크(중복 가능)하고 관련 사업화 내용 및 현황을 기재 예) 연구개발, 기술 개발, 시제품 제작 중, 개발 완료, 고도화, 제품 출시 등							√			
	√										
'25년 기술 및 제품의 개선 사항	※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선사항(2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)을 구체적으로 작성										
'25년 사업 계획	※ '기술고도화→제품사업화→공정개선' 중 지원을 희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※ 현 추진단계를 토대로 2025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(목표, 추진방안, 예상결과 등)										

'25년 사업화 성과 목표 (정량 및 정성)	정 량	기관 제시(필수)		기업 제시(3건 이상 필수)	
		성과 지표	달성 목표	성과 지표	달성 목표
		매출액 증가율(%)	35 * 고정목표	※ 성과지표 작성	※ 목표수치 작성
		고용인원 증가(명) ※ '24년 대비 '25년 고용인원 증가를 의미(순증)	※ 목표수치 작성	※ 성과지표 작성	※ 목표수치 작성
		투자유치(억)	※ 목표수치 작성	※ 성과지표 작성	※ 목표수치 작성
	정 성				

1. 사업 경쟁력

1-1. 시장 경쟁력

※ 산업주기(개발, 성장, 성숙, 쇠퇴)상 해당 기업의 사업화 단계, 해당분야 시장 분석(시장규모, 전망), 해당기업 아이템의 시장점유율(현황·예측), 기술 및 아이템의 시장 선도 가능성 등

산업 주기 및 위치

* 제품(서비스)의 단계별 개발, 성장, 성숙, 쇠퇴기로 볼 때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단계 기술

○

사업아이템(또는 해당분야)의 시장규모 및 전망

○

사업 아이템의 시장점유 가능성

○

사업 아이템의 시장선도 가능성

○

1-2. 기술 경쟁력

※ 기술현황(이전·개발·보유 기술, 지재산 현황 등), 경쟁사 대비 차별성·우수성, 기술 완성도, 모방 난이도, 기술보호 노력 등 지원기업이 가진 기술의 경쟁력 기술

경쟁사 대비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

○

-

기술의 완성도 및 난이도 경쟁력

○

-

□ 보유 기술

○ 보유 기술(지식재산권) 현황

순번	지식재산권 번호	특허기술·지재권명	등록국가	등록자(기관)	등록일자
		국내, 해외특허, 국제인증 등 포함			

○ 등록사항 이외의 연구개발 현황

- 국내 및 국제협약 체결 현황(MOU 등)

1-3. 사업화 경쟁력

□ 기반 시설 보유 역량

※ 연구개발, 기술확보, 제품생산 등을 위한 보유시설의 역량을 기재

○ 기반시설 보유 역량

-

○ 연구 및 생산 시설 등 기반시설 보유 현황

연구시설· 생산 장비명	규격	수량	용도 (활용내용)	활용시기	구입 가격	구입 년도
0000						
0000						

□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

※ 아이템과 관련한 판로개척 마케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역량 및 경쟁력 기재

-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점
-
- 최근 3년간 마케팅을 위한 노력

추진 사항	추진 기간	세부 내용

□ 기타 기업역량

※ 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구성원의 역량, 시장 대처 능력, 창업제품(서비스)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력사항 등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업의 자체 역량을 기재

- 경쟁 대처능력, 국내외 시장환경 유연성 대처능력
-
- 업무파트너(협력기업 등) 현황 및 역량

순번	파트너명	주요역량	주요 협력사항	비고
1	00제약		공동연구개발	~'23.12
2	000		제품판매를 위한 판로확보	협력 예정

1-4. 대표자·직원의 인적 역량

대표자 현황 및 역량

※ 창업제품(서비스)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, 역량 등을 기재

○

-

직원 현황 및 역량(조직역량)

※ 연구개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역량 등

	성명	직위	성별	학위 및 전공				담당 분야	채용 년월	본사업 참여율 (%)
				학교	전공	최종 학위	취득 년도			
1	주요 경력									
2	주요 경력									
3	주요 경력									
4	주요 경력									
5	주요 경력									

1-5.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

내수시장 진출 실적 ※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으로 기재

유통채널명	진출시기	판매 아이템	판매금액
○○마트	2019.2.14.~2019.2.22.		○○○백만원
...			
...			

글로벌 진출 실적 ※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으로 기재

수출국가수	수출액	수출품목수	수출품목명
○개국	○○○백만원	○○개	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...			
...			

글로벌 진출 역량 ※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으로 기재

해외특허 건수 (출원 제외)	국제인증 건수	국제협약체결 건수 (외국 현지기업과 MOU, NDA 등)
○건	○○건	○○건
...		
...		

자금조달 실적

조달금액	조달방식	조달처
○○○○원	크라우드 펀딩, 투자, 용자, 국고지원금(사업명)	기관명
...		
...		

기타(그 간의 실적)

--

2. 사업화 문제 인식

※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화 과제명 및 아이템과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및 내용 기재

현황 및 문제점

○

-

해결해야 할 과제 * 제품·서비스, 고객니즈, 시장·경쟁자 대비 개선 등 해결 할 사항 기재

○ 제품·서비스

-

○ 고객의 니즈

-

○ 시장·경쟁자 대비 개선

-

3. 사업 고도화 계획

※ 사업화 과제를 개발(개선)하는데 인지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, 고도화 전략, 추진 내용, 일정 등 기재(기술·제품 개발, 투자유치 내용 포함)
 ※ '기술고도화, 제품사업화, 공정개선' 중 지원을 희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도화 전략 수립

3-1. 사업 목표

사업 목표

○

-

3-2.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('25년~'27년, 3개년)

사업고도화 추진 전략 및 내용	2025년	1/4	
		2/4	
		3/4	
		4/4	
	2026년	1/2	
		2/2	
	2027년	1/2	
		2/2	

3-3. 사업화 과제의 고도화를 위한 '25년도 세부 계획

사업추진 전략

○

-

사업추진 내용(상세 계획)

○

-

3-4. ('25년) 사업추진 일정

구분	추진 계획	추진 일정											
		4	5	6	7	8	9	10	11	12			
1	계획수립 및 자료조사												
2	연구시설/장비 구축	■											
3	제품개발 원재료 구입	■	■	■	■								
4	기술개발, 시험분석			■	■	■	■	■					
5	외주가공, 디자인개발		■	■	■								
6	시제품개발				■	■	■	■	■				
7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							■	■	■	■		
8	최종보고서 제출											■	■

3-5.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

※ 자금의 필요성,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(국고지원금과 자부담금(현금, 현물)합산액)의 사용계획 등을 기재(신청사업의 공고문에 근거하여 작성)

<사업비 집행 기준>

1. **(인건비)** 총사업비(국고지원금, 자부담금의 합산액)의 50%(150백만원)를 초과할 수 없음
 - 신규고용인력은 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(현금, 현물)에서 기고용인력은 자부담금(현금, 현물)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
 - **(신규인력)** 사업공고일 기준, 6개월 이전(2024.07.24.)~협약종료일(2025.12.31.) 이내에 신규 채용 한자 또는 예정자에 한함
 - **(기고용인력)**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~2024.0724.)에 채용한 자에 한함(사업책임자 포함)
- ※ (인건비 계상) : 월급여(A) × 참여기간(B) × 참여율(C)
2. **(재료비)** 총사업비(국고지원금, 자부담금의 합산액)의 40%(120백만원)를 초과할 수 없음
3. **(공정개선비 및 용역비)** 사업비 집행계획 시 반드시 세부사용계획 제출해야 함 * <양식 3> 참조
4. **(임차비)** 총사업비(국고지원금, 자부담금의 합산액)의 20%(60백만원)를 초과할수 없음
5. **(지급수수료)** 전문가컨설팅, 해외진출, 시험분석, 국내외 박람회 참가, 홍보자료 번역, 기술이전 및 가치평가 수수료, 지식재산권
6. **(광고선전비)** 홈페이지 구축, 포장지 및 홍보물제작, 디자인 개발 등
7. **(회계정산비)** 지정회계법인에 지급하는 4백만원 고정지출 * 추후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8. 협약체결 이후 직접비와 간접비 간 사업비 변경 및 전용 불가
9. 현물은 인건비, 재료비, 시설장비비로만 사용 가능

<현물 인정 기준>

1. **(인건비)** 창업기업이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*인력의 인건비
 - * 단,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한함
2. **(재료비)**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료, 시약, 사업화 관련 재료 등
 - * 단, 협약일(안) 4월 15일로부터 과거 1년('24.4.16.)~사업종료일 6개월전까지('25.6.30.) 구입한 재료에 대한 수량, 금액 등 증빙서류 보유에 한함
3. **(시설장비비)**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관련 기자재
 - * 단, 협약일로부터 과거 4년 이내('21.4.16.~) 구입 건에 한하여 인정함
 - 환산액 산정방법 : (장비 및 기자재 구입금액)/5*(사업개월/12개월)로 산정

※ 위의 사업비 집행 기준 및 현물 인정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□ 소요예산 총괄표

* 총사업비 = 국고지원금 + 자부담금(현금, 현물)

비 목	산출 근거 내역	금액(천원)		
		국고지원금	자부담금	
			현금	현물
직접비	인건비			
	재료비			
	시설장비비			
	공정개선비			불가항목
	용역비			불가항목
간접비	지급수수료			불가항목
	임차비			불가항목
	광고선전비			불가항목
	회계정산비	*고정금액(추후 변경될 수 있음)	4,000	불가항목
	기타			불가항목
합 계		300,000	30,000	60,000

□ [국고지원금] 비목별 소요예산 상세 계획

○ 인건비

※ 국고지원금 인건비 : 해당 항목의 인건비는 자부담분의 인건비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, 신규 고용인력에 한해 지급 가능
 - 신규고용인력 :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'24.7.24.)부터 사업종료일내('25.12.31.)에 신규채용한 자

(단위: 천원)

비목	인력 구분	채용 시기	성명	직위	월급여 (A)	참여기간 (B)	참여율(%) (C)	합계 (A×B×C)	비고
인건비 (신규)	신규	00.00.00	000	사원	3,500	9개월	30	-	
	신규	예정	000	대리	2,000	9개월	20	100	
	신규								
	신규								
	신규								
	신규								
	신규								
	신규								
	신규								
합 계									

※ 참여인력 당 참여기간은 최대 9개월, 참여율은 최대 100%를 넘을 수 없음

○ (인건비 외) 사업화 자금 소요명세

(단위: 천원)

구 분		규격	단위	수량 (회수)	단가 (천원)	금액 (천원)	용도		
비목	상세 내역								
직 접 비	재료비								
		소 계						천원	
	시설 장비비								
		소 계						천원	
	공정 개선비								
		소 계						천원	
	용역비								
소 계						천원			
직접비 소계							천원		
간 접 비	지급 수수료								
		소 계						천원	
	임차비								
		소 계						천원	
	광고 선전비								
		소 계						천원	
	회계 정산비	회계정산비	건	건	1	4,000	4,000	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	고정
		소 계						천원	
	기타								
		소 계						천원	
간접비 소계							천원		
국고지원금 합계							천원		

□ [자부담 : 현금+현물] 소요예산 상세 계획

○ 인건비 소요명세

- ※ 신규고용인력은 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(현금, 현물)에서 기고용인력은 자부담금(현금, 현물)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
- ※ 자부담금 90백만원(현금 30백만원, 현물 60백만원)인 경우, 현금 인건비 최대 30백만원, 현물 인건비 최대 60백만원 동시 계상 가능(단, 인건비는 총사업비(국고지원금, 자부담 합산액)의 50%(150백만원)를 초과할 수 없음)
- ※ 신규고용인력 :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이전부터 사업종료일내에 신규채용한 자
- ※ 월급여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금액으로 함. 실지금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 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, 1년 미만인 자는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
- ※ 참여율은 정수만 인정(소수점이하 불인정), 합계는 정확해야함(반올림 불인정),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기재되어야 함

(단위: 천원)

비목	인력 구분	현고용 여부	고용 일자	성명	직위	월급여 (A)	참여기간 (B)	참여율(%) (C)	합 계 (A×B×C)		
									현금	현물	계
인건비	기존	고용	00.00.00	000	과장	3,500	8개월	30	-	0000	0000
	신규	예정	00.00.00	000	대리	2,000	8개월	20	0000	-	0000
합 계											

- 인건비 외 소요명세

- ※ 현물 산정 가능 비목 : 재료비, 시설장비비에 한함

(단위: 천원)

비목		환산액		산출내역	비고
비목	품명	현금	현물		
재료비					
소 계					

비목		환산액		산출내역	비고
비목	품명	현금	현물		
시설장비비					
소 계					
현금·현물 소 계					
인건비 외 자부담(현금·현물) 합계					

4. 성과창출 전략

※ 기술개발, 매출증가, 투자유치, 공동연구개발, 기타 협업사례 구축을 통한 기술판매, 제품개발, 판로 확보 등의 성과창출 전략 기술

4-1. ('25년 사업 성과목표)

※ 사업 성과 목표는 사업최종보고 및 평가시 정량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
 ※ 기관제시 목표 : 필수 설정 항목, 매출 및 투자금액의 경우 금액 또는 전년대비 %로 기입
 ※ 기업제시 목표 : 3건 이상 목표설정(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업 및 사업특성에 맞게 설정)

	성과 지표 및 목표			
	기관 제시 (필수)	기업 매출액 (전년대비) 35%(고정)	투자유치 백만원	고용인원 증가 명
기업 제시	(예시)지원제품 매출 백만원/%	(예시)시제품개발 건	(예시)특허출원 및 등록 건	(목표명)

4-2. (기술개발)

추진 전략 및 내용

- 주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지재권 등록, 논문등재,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과 관련한 내용

4-3. (매출)

내수시장 확보방안

○

-

※ 주 소비자층, 주 타겟시장, 진출시기,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

내수시장 매출예상 ※ 계획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으로 기재

유통채널명	진출시기	판매 아이템	판매금액
000	2000.0.0. ~ 2000.0.0.		000천원
...			

해외시장 진출방안

○

-

※ 주 소비자층, 주 타겟시장, 진출시기,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

해외시장 예상 매출 ※ 계획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으로 기재

유통채널명	진출 시기	판매 아이템	판매금액
00마트	2000.0.0. ~ 2000.0.0.		000천원
...			

4-4. (투자)

※ 엔젤투자, VC(벤처캐피탈),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,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

투자유치 방안 및 계획 ※ 계획이 없는 경우 '해당사항 없음'으로 기재

○

-

4-5. (신규고용)

추가 인력 고용계획 : 총 00명

순번	주요 담당업무	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	채용 시기	청년 여부 (만 39세 이하)
1	중자개발	000전공 학사 이상	'20.2	O / X
2	해외 영업 (국가명)	해당 국가 현지회화가 능통한 자		

4-6. (기타) 기업 특성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할 경우에만 사용(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)

기타 참고자료

제품(기술, 서비스) 참고 이미지, 인증 및 상장 등 기타서류 목록
2페이지까지 사용가능

- 2페이지 초과 시에 초과분량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
- 기타서류는 선택제출사항이므로 목록만 요약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
실제 자료는 별첨으로 압축하여 홈페이지 신청 시에 업로드 해야 함

